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11
----------	------

제출년월일 : 2023년 10월 1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개정(시행 2023.6.11.)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위임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명 등에 대한 의견제시 조항 정비 (안 제2조제2항)
- 나. 지명위원회 위원 수 확대 (안 제3조제1항)
- 다. 위원 해촉사유 규정 신설 (안 제5조)
- 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7조)
- 마. 의견 청취 범위 확대 및 자료 제출 내용 추가 (안 제9조)
- 바. 기타 자구 수정 등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제외법령
- (5) 시민협력과(공공갈등진단): 갈등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사항:
협의 완료

라. 기타

- (1) 입법예고 (2023. 8. 10. ~ 8. 30.) 결과: 의견 1건(수용)
 - 의견 내용(감사위원회 인권담당관)
 - ▶ 안 제5조(위원의 해촉)제1호의 해촉 사유인 '심신장애'는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적용할 우려가 있어 평등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2(위원의 위촉 해제)의 기준을 따르게 수정 필요
- (2) 신·구조문대비표: 해당 없음

※ 작성자 : 행정국 자치행정과 김마태(☎2133-5849)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7항”을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한다.

제2조,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제3조, 제4조 및 제2조로 한다.

제2조(종전의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그 밖의 지명”을 “지명”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 대상이 아닌 지하철역 등의 제정 및 변경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3조(종전의 제2조)제1항 중 “9명”을 “15명”으로, “5명 이상으로 하여야”를 “8명 이상 11명 이하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되며”를 “말고”로, “된다”를 “말는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 연구,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을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과위원회 또는”으로 한다.

제4조(종전의 제3조)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임기 중”을 “임기의”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 제6조를 제8조로 하며, 제6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의견청취 및 자료 제출)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회 회신과 서면심의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종전의 제6조)제3항 중 “시·도 경계간 개재지명”을 “경계에 있는 구역의 지명”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기존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개정에 따라 새로 위원회가 구성되는 전날 종료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u>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7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 <u>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에서 위임된 사항</u>----- -----.</p>
<p>제4조(기능) 위원회는 「<u>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u>」 제9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p> <p>1. (생략)</p> <p>2. <u>그 밖의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u></p> <p><u><신설></u></p>	<p>제2조(기능) ① --- 다음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u>지명</u>-----</p> <p>② <u>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 대상이 아닌 지하철역 등의 제정 및 변경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u></p>
<p>제2조(구성) ①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u>9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를 <u>5명 이상</u>으로 하여야</p>	<p>제3조(구성) ① ----- ----- ----- <u>15명</u> ----- ----- <u>8명 이상 11명</u> 이하로 ---.</p>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

③·④ (생략)

⑤ 간사는 위원회 담당 과장 또
는 담당관이 되며, 서기는 위원
회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⑥ 위원장은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 연구,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
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
임위원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의견제시) 위원회는 도로
· 교량 · 터널 · 램프 · 지하보도
· 공원 · 광장 · 지하철역 등의
시설명과 뉴타운사업지구 등의
구역명의 제정 및 변경에 대하
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 맡고
----- 맡는다.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 맡고-----
----- 맡는다.

⑥ ----- 위원회의 업무를 효
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과위
원회 또는 -----
-----.

제4조(임기) -----
----- 한 차례만 --
-----.

----- 임기의 ---
-----.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
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
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신 설>

제7조(의견청취) 위원회에서 지명을 조정 또는 의결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관계공무원이나 관련전문가로부터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

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회 회신과 서면심의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지명의 조사) ①·② (생략)

③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시·도 경계간 개재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경기도지사와 사전 협의하여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 ~ 제10조 (생략)

제8조(지명의 조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경계에 있는 구역의 지명 -----

-----.

제9조(의견청취 및 자료 제출)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 제12조 (현행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와 같음)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 행정국 자치행정과 김마태(2133-5849)